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 한국 -

현 대 호



재정법제 연구 11-15-③-4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 한 국 -

현 대 호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V)

- 한국 -

A Comparative Law Study on Strengthen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IV)

- Korea -

연구자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Hyeon, Dae-Ho

2011.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와 공사지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과도하게 하위규정에 의존하는 등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에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각종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낮으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관련 법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II. 주요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공분야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가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에 대하

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규율하고 있음

-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각각 그들 국가의 공공분야 계약법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왔음. 이들 국가의 경우 공공분야의 계약법령은 관련 민간분야의 하도급 법령과 구분되어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체계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분야 계약법의 이원화(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대하여 민간분야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개의 장으로 규율하고 있음
- 국가발주공사는 국가계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분야의 하도급거래와는 구분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예규 형태의 ‘계약예규’에서 공공분야의 하도급에 대하여 일부 규정되어 있는데, 법체계상으로도 관련 내용상으로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제공
-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하도급, 정부계약,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조달, 하도급거래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Recently, damages caused by subcontracts and construction delay in Government ordered constructions have become a social issue.
- Regulations on Government constructions are scattered into several instruments and depend heavily upon lower provisions so that it de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elements that control the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liability concerns between the ordering and accepting party, also resulting in a weak systematic basis for a stabilized and constructive development of the market.
-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related legal system of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nd review the ways to improve Korea's existing legal system.

II . Main Contents

- The 「Government Contracts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s Act」 keeps silence regarding the subcontracts in public sections.

- There are provisions regulating subcontract trades in private sections inducing their fair trade within the 「Fair Subcontract Trade Act」, 「Basic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while construction subcontracts ordered by the Government are regulated under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s」, 「General Terms of Service Contracts」 and 「General Terms of Purchase(Production) of Goods」.
-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have been readjusting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on subcontracts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of contracts in public sections. In these countries, contract regulations in public sections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related with subcontracts so they exist as a Special Act or in separate chapters.
- In the case of Korea, although it maintains a dual legal system(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s), the Acts provide regulations on subcontracts of private sections in uniformity with public sections, and in case of constructions, subcontracts on constructions are regulated under a separate chapter entitled the 「Basic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 Considering the nature of Government contracts, a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subcontracts in private sections and regulated as such. Specially, in the case of subcontracts in private sections, some provisions are stipu-

lated within the ‘contract regulation’ established in 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t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that it be regulated by a separate Act considering the pertaining legal system and its contents.

III. Expected Effects

- Provide related legal system as a way for improvement
- Use for basic docume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national policies

➤ **Key Words :** Subcontract, Government Contract, Fair Trade Commission, Government Procurement, Subcontract Trad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문제의 제기	13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 2 장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과 과제	15
제 1 절 외국의 입법례 현황과 시사점	15
1. 미 국	15
2. 독 일	16
3. 일 본	17
4. 소 결	19
제 2 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	20
1. 개 관	20
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26
3.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공정화에 관한 특칙	37
4. 소 결	47
제 3 장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49
제 1 절 개 관	49
제 2 절 공사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화	52

1. 하도급의 승인 등	52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53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54
제 3 절 용역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54
1. 기성대가의 지급	54
2. 대가의 지급	55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55
4. 하도급 관리 등	56
제 4 절 물품구매(제조)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56
1. 대가의 지급	56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57
제 5 절 소 결	58
제 4 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59
제 1 절 개 관	59
제 2 절 (가칭)공공계약의 지급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59
1. 제정의 필요성	59
2. 공공계약의 원칙 및 필요적 기재 사항	60
3. 급부의 완료 확인 및 검사 시기	60
4. 대가의 지급	61
5. 완료확인 또는 검사 지연	62
6. 정부의 감독	62
7. 징계 등	63

제 5 장 결 론 65

참 고 문 헌 67

【첨 부】

[첨부1]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73

[첨부2] 일본의 하도급관련 법령 85

1.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85

2. 하청 중소기업진흥법(1970년12월26일 법률 제145호) 10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최근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와 공사지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하도급질서 건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공공사 수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방지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강화하여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연지급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문제된다. 종래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규정 위반 시 당해 현장에 한하여 직불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문제된다. 둘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평등 도급 관행의 개선이 문제된다. 셋째,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의 공공계약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올해 5월 기획재정부는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계약예규들을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 국가발주공사에 관련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국가발주공사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과도하게 하위규정에 의존하는 등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에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각종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낮고 관련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입법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의 분석에 있어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 관련하여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하였고, 각각의 연구보고서(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 (II), (III))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외국의 법제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다만, 각국의 분석에서 제시한 모든 시사점을 이 연구에 반영한 것은 아니며, 연구책임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법령 개선에 필요한 한도에서 입법의 취지 및 주요 입법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건설공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과 물품구매(제조)계약도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국가발주공사에 역점을 두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발주공사도 비교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고찰하였다. 이들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특히,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미국법, 독일법 및 일본법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상호 비교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령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제 2 장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과 과제

제 1 절 외국의 입법례 현황과 시사점

1. 미 국

종래 미국의 정부조달계약법은 국방조달과 일반공공조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1984년 시행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FAR)에 의해 행정입법 차원에서 양자가 통합되었고, 1978년의 계약분쟁법(Contract Dispute Act)과 1994년의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에 의해 법률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법규명령(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연방조달규정(FAR)은 하도급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방조달규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주공사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의 유무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의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조달규정에서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공공성(公共性)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발주공사를 따로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전문이 개정되어 제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발주자와 (민간)발주자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에 관하여 (민간)발주자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공공발주자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의 경우엔 강한 공공성에 관한 요청이 작용

한다. 둘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평가요소와 운영방향을 들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발주의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조달규정과 같이, 하도급계약자에 대한 적격심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흥이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같은 잠재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규제에 중점을 두어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기회 확대와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¹⁾

2. 독일

건설·조달·서비스 지침(Richtlinie 2004/18/EG)은 EU 회원국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핵심 지침이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가 독일의 연방과 주의 행정절차법(VwVfG)상에 규정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절차법과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 독일연방의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이다. 동법 제4장의 공공계약의 체결 부분은 하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률들을 행정입법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규정들 중에는 건설공사 발주규칙(VOB: erdingungsordnung für Bauleistungen)이 있고, 국가가 발주하는 하도급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VOB/A(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 Allgemeine Bestimmungen für die Vergabe von Bauleistungen)와 VOB/B(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ür die Ausführung von Bauleistungen)가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시공의무 현실화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1) 최인호,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 한국법제연구원, 2011. 67-70쪽 참조.

일반계약조건 제4조제8항제1호1문에 건설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에 관하여 우리나라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3조에 그 위반사실에 대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오랜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 다른 특단의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도급의 전제조건 현실화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독일법상에 규정된 내용(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계약조건 제4조제8항 참조)과 유사하다. 동 조항의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수반될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하도급관련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상향조정을 들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 제1편 제8조(§ 8 Abschnitt 1 VOB/A) 이하에서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관련 사항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부분 행정입법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많은 규정에서 하도급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까지 행정입법에 위탁하고 있는 바, 가능한 한 이들을 법률 차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항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의회유보원리를 하도급법제에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²⁾

3. 일 본

일본의 경우 하도급 거래의 규정은 1956년 6월 정부계약의 지불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이라 한다)이

2) 강기홍,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I), 한국법제연구원, 2011. 66-70쪽 참조.

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의 규제와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이 있으며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에 의해 하도급대금지불 지연등방지법과 유사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복해서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도급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21조 제4항). 한편 정부계약의 경우 그 지불지연방지 등 그 공정화를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회계경리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불지연방지를 제정하였다(제1조). 공공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지만, 일방 당사자인 공공부문은 그 공공부문으로서의 성질 때문에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건설업법준수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가 건설업법에 위반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부지에 의한 법령위반행위를 막고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대등한 관계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실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업계단체, 원사업자, 거래처 등에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인 ‘정부계약의 지불지연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발주, 민간발주의 구별 없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종 행정예규의 형태로 대응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가

이드라인제공으로 높은 법령준수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책정한 건설업법령준수가이드라인에서는 건설업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의 흐름에 따른 형태로 견적조건의 제시,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 부당한 사용 재료 등의 구입 강제, 지불 보류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건설업법의 규정을 해설’, ‘건설업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사례를 제시’ 하는 동시에 독점금지법, 사회보험과 같은 관련 법령의 해설, 그 위에 자료편으로서 건설업의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법령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건설업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³⁾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각각 그들 국가의 공공분야 계약법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왔다. 이들 국가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분야의 계약법령은 관련 하도급 법령과 구분되어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별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체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분야 계약법의 이원화(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민간분야와 통일적으로 일원화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개의 장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례적인 입법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발주공사(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이 가지는 공익성 내지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민간분야의 하

3) 이효경,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Ⅲ),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58쪽 참조.

도급거래와는 차별되는 보다 강화된 공정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의 하도급에 대하여 계약예규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이하고, 법체계상으로는 관련 내용상으로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다른 외국의 입법 동향과 부합한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

1. 개 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분야 계약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넓은 의미로 볼 때 공공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들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양 법률의 주요 입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계약법의 주요 입법사항

전통적으로 공공계약은 재정활동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국가계약은 ‘예산회계법’의 규율을, 지방계약은 ‘지방재정법’의 규율을 받아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국제입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1995년에 국가계약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었다. 국가계약은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현행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을 입법 이유로 삼고 있다.

제정 당시 이 법은 첫째, 정부조달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였다. 다섯째, 정부조달협정에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달분쟁심의회위원회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다. 국가계약법은 2005년 12월 14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2)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입법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1963년 11월 11일) 제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매·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각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1988년 4월 6일 전부개정에서 제7장 계약에서 제59조(계약의 원칙), 제60조(계약의 위임), 제61조(계약의 방법), 제6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3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준용)를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5년 8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분리입법을 하였다.

지방계약법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을 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⁴⁾ 제정 당시 주요내용은 첫째, 수의 계약절차를 투명화 하였다. 즉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

4) 지방계약법은 ① 지방계약의 특수성 반영 ②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③ 계약의 경제성·효율성 확대라는 3대 제정방향을 가지고 제정되었다(최두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의 의미와 내용, 지방재정 제4호(통권 제13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8., 35쪽 참조).

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概算契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즉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을 제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계약법은 지방예산절감과 최적가치 낙찰제도 등 선진형 계약제도 구축을 위하여 2009년 2월 9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 심사 또는 제한입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였다. 셋째, 하자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계약을 확대하였다. 넷째,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섯째, 예산의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을 도입하였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3) 공공공사의 하도급에 적용되는 법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분야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분야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대신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하도급거래에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형태로 관련 내용을 두고 있다.

1) 국가발주공사 하도급의 경우

국가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61-11, 2011.05.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3-16, 2011.05.13.)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2)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예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81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2008. 7. 7.))으로 구분하여 지방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계약의 체결, 채권의 양도, 계약이행의 보증, 공사계약의 이행, 공사 설계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공사목적물의 하자, 하도급,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용역계약의 체결, 채권의 양도, 계약이행의 보증, 용역계약의 이행,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채권의 양도, 계약이행의 보증, 물품구매계약의 이행,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만 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하도급의 승인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i)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ii)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증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1) 하도급거래의 개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여기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건설공사계약,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분야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분야의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분야의 계약과 공공분야의 계약은 법체계상 이원화되어 있는 현황과 불조화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하도급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무

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련 행정예규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선급금의 지급의무

하도급을 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이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이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

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전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6) 공탁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7) 각종의 금지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각종의 금지행위를 별개의 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들 수 있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⁵⁾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둘째,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셋째,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여기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

5)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넷째, 부당반품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열거한 경우6)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다섯째, 감액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일정한 경우7)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

-
- 6) 여기서 열거한 경우란 ①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②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여기서 일정한 경우는 ①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한편,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후단). 이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여섯째,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일곱째,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덟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정하여진 사항⁸⁾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아홉째,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열번째,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열한번째, 보복조치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8)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열두번째, 탈법행위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의무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

9) 여기서 일정한 경우는 ①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

(4) 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

1)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청구권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2)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5)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더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참조).

3.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공정화에 관한 특칙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다면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제1항).

(3)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1항). 단,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

(4)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

(5)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

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전단).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3항).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4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5항).

(6)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지기 전에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¹⁰⁾을 주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7)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1)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범위에서 공사의 중

10) 여기서 일정한 기간은 ①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 이상 ②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 이상 ③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 이상 ④공사예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 이상을 말한다.

류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다만, 수급인은 (i)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ii)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iii)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업자는 1건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이 경우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

(8)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1)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②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3항).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 한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또한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전단).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

(10)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며(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항),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2항).

(1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준공금을 받은 경우(하도급대금)와 기성금을 받은 경우(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로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¹¹⁾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¹²⁾ 발주자는 일정한 경

11) 여기서 일정한 경우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2) 직접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공사대금의 흐름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공사 목적물 완성에 대한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한다. 둘째,

우13)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의 실정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XI-2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35조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직접지급 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즉 하도급법이 강행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다. 반면, 하도급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관계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요건이 일단 성립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

수급인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하수급인의 기여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한다. 셋째,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대금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제도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발주자와 하수급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13) 여기서 발주자가 정한 경우란 ①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XI-2-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 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하도급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 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¹⁴⁾

(1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와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14) 대판 2003. 9. 5. [2001다64769]

제 2 장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과 과제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

2)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1항). 수급인은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제2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및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참조).

4)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공정화에 관한 특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발주공사 중에서 대부분이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화를 별도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각종의 금지행위를 별개의 조항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입법 방법상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항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그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를 각호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아래의 각종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해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제 3 장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 1 절 개 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61-11, 2011.05.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3 6, 2011.05.13.) 등으로 규율된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한 사항이외에는 마땅히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분야의 도급계약에 대하여 규율한다.

첫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규율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즉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째, 하도급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즉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써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즉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¹⁵⁾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¹⁶⁾ 하수

1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이다.

1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이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경우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넷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이 금지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즉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한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이다.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여섯째, 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2 절 공사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화

1. 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공

사계약조건 제42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42조제2항).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i)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ii)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43조제1항).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사계약조건 제43조제2항).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43조제3항).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43조의2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43조의2 제2항).

제 3 절 용역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1. 기성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시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2.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전단).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5항 전단).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시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제2항).

4. 하도급 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제1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제2항).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제3항).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승인 시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제5항).

제 4 절 물품구매(제조)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1.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전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시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6항).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2조의2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2 제2항).

제 5 절 소 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발주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법률차원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된다. 세부적인 규정은 국가발주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규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의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는 민간분야와 커다란 차이가 없이 취급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공공분야의 계약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 등 공공분야의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불균등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도급계약에 대한 법률차원의 규율이 필요하며, 계약예규의 내용도 대부분 법률차원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약예규라는 형태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것처럼 향후에 국가 발주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을 포함하는 공공분야의 공사계약,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을 포괄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제 4 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개 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국가 등 공공분야의 발주공사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두고서 발주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건설공사에서 공공계약의 대금 지연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용역계약과 물품구매계약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여 공공분야의 도급계약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계약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법령도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공계약의 발주에서 발생하는 대금지연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2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계약에서 있어 계약이 가지는 공공성, 대금의 지급지연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주공무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 법률차원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래에서는 일본의 ‘정부계약의 지불지연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할 수 있다.

제 2 절 (가칭)공공계약의 지급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1. 제정의 필요성

이 법률의 제정은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 그 공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달사무 처리의 능률화를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계약이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의 완성 또는 작업 그 밖의 역무의 급부 또는 물건의 납입에 대하여 국가가 대가의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계약의 원칙 및 필요적 기재 사항

정부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이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의 합의에 기초로 해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급부의 내용, 대가의 액수, 급부의 완료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외, 그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계약서(그 작성에 대신해서 전자적 기록의 작성이 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한편, 계약서에는 ①계약의 목적인 급부 완료의 확인 또는 검사의 시기 ②대가의 지불의 시기 ③각 당사자의 이행의 지체 그 밖의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지연 이자, 위약금기타의 손해 등 ④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급부의 완료 확인 및 검사 시기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종료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에 대해서는 14일, 그 밖의 급부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날로 해야 한다. 국가가 상대방이 한 급부를 검사해 그 급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국가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는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시정 또는 개선한 급부를 종료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약정한 기간 이내의 날로 할 수 있다.

4. 대가의 지급

국가가 급부의 완료의 확인 또는 검사를 종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적법한 지불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40일, 그 밖의 급부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날로 해야 한다. 국가가 상대방의 지불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국가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그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청구의 내용의 부당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때에, 해당 청구의 거부를 통지한 날로부터 국가가 상대방이 부당한 내용을 바꾼 지불 청구로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약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청구의 내용의 부당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에 있어서는 적법한 지불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특수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장기간에 1.5를 곱한 일수 이내의 날로 할 수 있다.

국가가 약정한 지불 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 이자의 액수는, 약정의 지불 시기도래의 날의 다음날부터 지불을 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르고, 해당 미지불금 액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의 일반대출이율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밀돌아서는 안된다. 다만, 그 약정의 지불 시기까지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따를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의 계속하는 기간은 약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 이자를 지불하는 일수에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완료확인 또는 검사 지연

국가가 약정의 시기까지 급부의 완료의 확인 또는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시기를 경과한 날부터 완료의 확인 또는 검사를 한 날까지의 기간의 일수는, 약정 기간의 일수로부터 빼거나 또는 해당 지연기간이 약정 기간의 일수를 넘을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는 그 넘는 일수에 따라 이 계산의 예에 준해서 지불 지연에 관해 약정한 이율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상대방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정부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에 의해 밝히지 않을 때는 그 시기는 상대방이 급부를 종료하고 국가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날, 그 시기는 상대방이 지불 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날이라고 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국가가 지불 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 이자의 액수는 계산의 예에 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라고 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가 선지불 또는 개산불(概算拂)지불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불완료 금액이 지불 확정 금액을 초과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그 초과액을 반납 고지가 있었던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은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것을 국가에 반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르고, 해당 미반납 금액에 대하여 그 비율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국가에 반납하게 할 수 있다.

6. 정부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률이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고, 정부계약에 기초로 하는 지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기관에 대하여 지불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현장감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불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목적으로 정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지불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시키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7. 징계 등

국가의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국가의 지불을 현저하게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직원의 임명권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검사 결과, 국가의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국가의 지불을 현저하게 지연시켰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 그 직원의 임명권자가 그 직원을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임명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 법률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계약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통합적으로 규율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근본적으로 민간분야에서 나타나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도급거래를 규율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즉 민간분야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 및 상법 등 민사법에서 규율하고 공공분야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조달계약법에서 규율한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에 대하여도 민간분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율한다. 공공분야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별도 입법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물론 공공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개의 장(예컨대,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4장 공공발주’처럼)으로 공공발주를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건설법률연구회 편저, 하도급의 법률관계, 2005년.
- 권재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년 2월.
- 김승일, 중소기업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영법률 제19집제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월.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편],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2009년.
- 박정구 [저],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년.
- _____, 대·중소기업의 갈등해소방안 :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9권제2호(통권 제67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년 8월.
- 이동진,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조 제58권제3호(통권 제630호), 법조협회, 2009년 3월.
- 이병희,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서울대 대학원, 2009년.
- 주진열,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09년 6월.
- 최두선,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년 7월.
- 최재원, 하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소고 : 서울고등법원 2005누22540 판결을 대상으로, 경쟁법연구 제15권, 법문사, 2007년 5월.

참 고 문 헌

현병철,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호제도, 법학논총 제25집제1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8년 3월.

홍명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규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경쟁 법연구 제16권, 법문사, 2007년 11월.

<외국문헌>

Adrian L. Bastianelli et al., Federal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Forum, 2003.

American Bar Association, Government Contract Law: The Deskbook for Procurement Professionals, 2007.

Aspatore Books Staff, Navigating Government Procurement: Procurement Experts on Reviewing Bids and Proposals, Negotiating Contracts, and Managing Vendor Relationships (Inside the Minds), Aspatore Books, 2008.

Helen Randall et al.,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Procurement, Tottel Publishing Co., 2007.

Jean-Jacques Verdeaux, PUBLIC 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 32 Pub. Cont. L.J. 713(2003).

Jody Freeman, EXTENDING PUBLIC LAW NORMS THROUGH PRIVATIZATION, 116 Harv. L. Rev. 1285(2003).

Jody Freeman, THE CONTRACTING STATE, 28 Fla. St. U. L. Rev. 155(2000).

Jody Freeman, THE PRIVATE ROLE IN PUBLIC GOVERNANCE, 75 N.Y.U. L. Rev. 543(2000).

- John Cibinic Jr.,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CCH, Inc., 2006.
- Joshua I. Schwartz, PUBLIC CONTRACTS SPECIALIZATION AS A RATIONALE FOR THE COURT OF FEDERAL CLAIMS, 71 Geo. Wash. L. Rev. 863(2003).
- Marc A. Pederson, RETHINKING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LAUSE IN FEDERAL CONTRACTS, 31 Pub. Cont. L.J. 83(2001).
- Michael A. Branca et. al, Federal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 Ralph C., Jr. Nash et al., Government Contracts Reference Book: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Language of Procurement, George Washington Univ. Government, 1997.
- Terrence M. O'Connor, Understanding Government Contract Law, Management Concepts, 2007.
- W. Noel Keyes, Government Contracts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2004.
- Zachary D. Krug, DUE PROCESS AND THE PROBLEM OF PUBLIC CONTRACTS: A CRITICAL LOOK AT CURRENT DOCTRINE, 89 Cornell L. Rev. 1044(2004).

첨 부

[첨부1]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 4 장 공공발주

제 1 절 발주절차

제97조 (일반원칙) ① 공공계약의 발주자는 경쟁과 투명한 체결절차에 대한 이하의 규정상 조치에 따라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한다.

② 발주절차의 참여자는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에 근거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③ 중립적 이해관계가 공공계약의 발주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급부는 대량적으로 분류되고 종류와 영역에 따라 나뉘어서 발주되어야 한다. 다양한 부분 또는 영역구분없이 함께 발주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요구될 때 허용된다. 공적 발주자가 아닌 기업이 공적 사무의 집행 또는 수행을 위탁받는 경우 발주자는 기업에게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제1문에서 제3문의 절차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

④ 계약은 전문적이고 직무수행능력이 있으며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낙찰된다.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입찰자가 계약대상과 사항적인 관련성이 있고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적인 요구가 입찰자, 특히 사회적이고 환경 관련된 또는 혁신적인 관점과 관련된 입찰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다른 또는 계속적인 요구사항은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입찰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발주자는 기업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⑤ 가장 경제적인 입찰가에 낙찰된다.

- ⑥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해서 발주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 특히 공고, 기간, 발주의 유형, 기업과 입찰 내용의 선택과 평가, 계약의 체결과 기타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⑦ 입찰기업은 발주자가 발주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제98조 (발주자) 이 장의 공공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역단체(법인)와 그의 특별재산(특별재단)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사법상의 법인으로 그 주된 이해관계가 비영리적인 업무의 수행에 있으며, 공공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
3. 그 구성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
4. 식수 또는 에너지 공급 및 교통분야의 사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그 업무가 관할 행정청이 보장하는 특별한 또는 배타적인 권리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우이거나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이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5. 사법에 근거한 기업으로서 그 일반적인 행위가 제1호나 제3호에 근거하여 50% 이상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6.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는 제3자에 대한 위임의 측면에서 건축면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99조 (공공발주) ① 공공발주는 물품, 운송,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의 유상계약과 공사위탁, 용역위탁을 목적으로 현상광고절차를 의미한다.

- ② 물품조달은 물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구매 또는 할부구매와 리스 임대나 구매를 전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질권설정을 말한다. 계약에는 부관이 부가될 수 있다.
- ③ 공사발주는 공적 발주자를 위한 건축계획의 시공 또는 설계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의 결과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제3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용역발주는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 ⑤ 이 장의 현상광고는 어떠한 계획에 대한 가액의 분포를 통해 또는 통하지 않고 비교평가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 ⑥ 공사특허는 유상의 반대급부 대신 정해진 기한 동안 공사시설의 이용을 반대급부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지급도 포함되는 공사발주의 수행을 위한 계약이다.
- ⑦ 공공발주는 물품의 구매와 용역의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발주는 그 용역의 가액이 물품구매가액을 넘어서는 경우 용역발주로 본다. 이 때 용역발주가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공사가 부가작업일 경우 용역발주로 본다.
- ⑧ 발주내용에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그 행위는 주된 대상으로 표시된다.

제100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한계가액이 제127조에 따른 법규명령에서 정한 한계가액에 달하거나 넘어서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이 장의 규정은 근로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군인의 파견과 관련된 국제적 협정에 근거하고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 b. 독일연방공화국과 하나 또는 다수의 국가간에 체결한 국제협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협정당사국이 유럽 경제구조 내에 있지 않고 협정이 협정당사국 간에 공동으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또 다른 절차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c. 어떠한 국제기구의 특별한 절차에 근거를 둔 경우
- d.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과 행정규정에 합치하여 기밀로 선언되었거나 그 시행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그것이 국가보안의 중대한 관심사의 보호에 기여하는 경우
- e. 계약이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296조 제1항 b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f. 식수나 에너지 공급 또는 교통이나 통신분야를 업무로 수행하는 발주자가 스스로 종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발주하는 경우
- g. 특정한 사인에게 발주되는 경우, 즉 발주자가 제98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인 경우
- h. 토지나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나 임대관계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경우
- i. 전문적 업무로써 다른 목적에 기능하는 제98조 제4호의 발주자의 경우
- j. 프로그램의 구매, 개발, 제조의 경우와 라디오 또는 TV를 통한 프로그램 송신의 경우
- k. 발주자가 공공 통신망의 제공 또는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을 위한 하나 또는 다수의 통신역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l. 중재재판업무나 화해재판업무의 경우
- m. 유가증권의 제출, 판매, 구매 또는 이전과 관련되거나 중앙은행의 업무같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금업무의 경우

n. 연구와 개발용역의 경우

제101조 (발주유형) ① 운송, 공사. 용역의 공공발주는 교섭절차 또는 경쟁절차에서 공개된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절차에 따른다.

② 공개절차는 참여기업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절차이다.

③ 비공개절차는 참여기업의 수에 제한을 두는 절차이다.

④ 경쟁절차는 특별히 복잡한 발주에 대하여 발주자가 식수 또는 에너지 공급,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제98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행하는 절차이다.

⑤ 교섭절차는 발주자가 선택된 기업과 하나 또는 다수의 발주조건 의 협상을 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이다.

제101a조 (정보제공 및 대기의무) ① 발주자는 그의 제시내용이 고려 될 수 없는 해당 입찰자에게 기업의 이름과 불고려의 근거 및 계약 체결시점을 문서형식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교섭절차에서 특별한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통지의 생략이 정당화될 수 있을 때 생략된다.

제101b조 (무효) ① 발주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 급하여 무효이다.

1. 제101a조에 위반한 경우

2. 공공발주가 법률에 근거없이 다른 기업이 발주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법률위반이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에 행해진 경우

② 제1항의 무효는 위반사실을 인식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절 심사절차

I. 심사기관

제102조 (원칙) 감독기관의 심사 가능성과 관계없이 공공발주는 발주심판소의 심사에 따른다.

제103조 (삭제)

제104조 (발주심판소) ① 공공발주의 심사는 연방에 소속된 조달의 경우 연방 발주심판소가 주에 소속된 경우 주 발주심판소가 행한다.

② 발주절차에 있어서의 작위나 부작위에 관한 발주자에 대한 제97조 제7항의 권리와 그 외 청구권은 발주심판소와 항고법원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통상법원의 관할권과 제19조와 제20조 위반에 대한 카르텔청의 권한은 인정된다.

제105조 (구성, 독립성) ① 발주심판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독립적이며 자신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② 발주심판소는 1인의 주심과 2인의 배석에 의해 구성된다. 주심과 상임배석은 행정업무 또는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전문직의 능력을 가진 종신직이다. 주심 또는 상임배석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심이 법관의 자격을 갖는다. 배석은 발주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06조 (기구, 기관) ① 연방은 발주심판소를 연방카르텔청에 설치한다. 발주심판소의 기구와 구성 및 사무분장은 연방카르텔청장이 정

한다. 명예직 배석과 그의 대리인은 공법상 심판기관(öffentlichrechtlichen Kammer)의 추천에 의해 연방카르텔청장이 임명한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연방경제기술부의 허가에 따라 사무규정을 발령하고 고시한다.

② 이 절의 의미에서의 주의 심사기관의 기구, 기관과 구성은 주법에 따른 관할기관에서 정하며, 주정부에서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권한은 위임될 수 있다. 주는 공동의 심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6a조 (발주심판소의 관할범위) ① 연방 발주심판소는 다음 각 호의 발주절차에 대해 심사한다.

1. 연방의 발주절차
 2. 제98조 제2호의 발주자에 의한 발주절차
 3. 제98조 제4호의 발주자에 의한 발주절차
 4. 제98조 제5호의 발주자에 의한 발주절차
 5. 제98조 제6호의 발주자에 의한 발주절차
 6. 연방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주절차
- ② 발주절차가 행정위임의 범위 내에서 연방을 위해 주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이 주의 발주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 ③ 그 외의 경우에 있어 발주심판소의 관할권은 발주자의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다.

II. 발주심판소의 절차

제107조 (진행, 신청) ① 발주심판소는 심사절차를 신청에 의해서만 행한다.

② 신청인적격은 당해 공공조달에 이해관계를 갖고 발주에 관한 규정의 위반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모든 기업에게 인정된다.

제108조 (형식) ① 신청은 발주심판소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은 특정한 청원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의 적시,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주요 권리침해와 처분가능한 증명수단을 포함하여 신청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09조 (절차참여자, 제3자 참여) 절차참여자는 결정을 통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발주심판소에 의해 소환된 신청자, 발주자와 기업, 이해관계인이다. 소환결정은 취소될 수 없다.

제110조 (심사원칙) ① 발주심판소는 사실관계를 심사한다. 발주심판소는 참여자가 제기하거나 그 외 알려진 사항에 국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광범위한 적법성의 심사의무는 발주심판소에 주어지지 않는다. 발주심판소는 자신의 전체 업무수행에 있어서 발주절차의 경과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② 발주심판소는 신청이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지 심사한다. 신청이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발주심판소는 발주자에게 신청의 복사본을 교부하고 발주절차를 기록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발주서류를 심판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 (서류열람) ① 참여자는 발주심판소의 서류를 열람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정본,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심판소는 특히 비밀보호 또는 영업비밀의 보장 등의 중대한 근거를 이유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2조 (구술심리) ① 발주심판소는 구술심리 후 결정기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변론기회를 갖는다. 참여자의 동의에 의

하여 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구술변론기한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사안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13조 (절차의 속행) 발주심판소는 신청 후 5주의 기간 이내에 문서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별히 사실상 법률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주심은 참여자에게 공지하고 예외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2주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정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4조 (발주심판소의 결정) ① 발주심판소는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와 권리침해를 제거하고 관련 이익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결정한다.

② 이미 이루어진 낙찰은 취소될 수 없으며 단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친다.

제115조 (발주절차의 정지) 발주심판소에 심판을 신청하여 그 신청서가 발주자에 송달되면 입찰절차가 자동정지되어 낙찰이 봉쇄된다.

제115a조 (주법률의 배제) 이 장의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주법률을 통하여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Ⅲ. 즉시항고

제116조 (허용, 관할) 발주심판소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2주 이내에 고등법원의 발주재판부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발주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여했던 신청인, 발주주체, 참여인만이 항고인 자격이 있다.

첨 부

1. 발주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즉시항고는 발주심판소의 절차참여자에게 인정된다.
2. 즉시항고는 또한 발주심판소가 제113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이 경우에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3. 즉시항고는 발주심판소가 소재지의 관할 주고등법원이 행한다. 주고등법원에는 발주부를 둔다.

제117조 (기간, 형식) ① 즉시항고는 2주간의 기한 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제116조 제2항의 경우 기한의 경과는 서면이 항고법원에 도달한 때 시작된다.

② 즉시항고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 행해져야 한다. 항고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심판소의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취소되고 어느 정도로 그와 다른 결정이 신청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2. 항고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과 증명수단의 보고

제118조 (효력) 즉시항고는 발주심판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2주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발주심판소가 신청의 심사를 거부한 경우 항고법원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을 항고법원의 결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9조 (항고절차의 참여자)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발주심판소 절차의 참여자가 참여한다.

제120조 (절차규정) ① 항고법원에 대하여 참여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권한을 대리행사하여야 한다. 공법상 법인은 공무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② 민사소송규정 제69조, 제70조 제1항에서 제3항, 제71조 제1항과 제6항, 제71a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111조, 제113조는 준용된다.

제121조 (낙찰에 대한 사전결정) 발주자의 신청 또는 기업의 신청에 낙찰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가능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항고결정까지 절차를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보다 훨씬 우월한 경우 발주절차의 계속과 낙찰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2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달절차의 종료) 제121조의 신청을 한 발주자가 항고법원에 한 경우 발주절차는 결정 후 10일의 경과 후에 종료된다.

제123조 (항고결정) 법원이 항고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발주심판소의 결정은 파기된다.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발주자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제114조 제2항은 준용된다.

제124조 (구속력과 제출의무) ① 발주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발주심판소의 절차가 행해졌다면, 통상법원은 발주심판소의 결정과 주고등법원의 결정 및 제2항에 따른 연방통상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

② 주고등법원은 다른 주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연방통상법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 연방통상법원에 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통상법원은 주고등법원을 대신하여 결정한다.

[첨부2] 일본의 하도급관련 법령

1.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¹⁾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하청 대금의 지불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게 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동시에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1. 이 법률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판매 또는 업으로서 위탁받은 제조(가공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목적물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또는 이들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金型) 또는 업으로서 행하는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서 행할 경우 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또는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으로서 위탁받은 물품의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사업자가 그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서 행할 경우 그 수리 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http://www.jftc.go.jp/sitauke/act.html>)

3. 이 법률에서 정보성과물작성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제공 또는 업으로서 위탁받은 작성의 목적인 정보성과물의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사업자가 그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행할 경우 그 정보성과물의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역무제공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제공의 목적인 역무의 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건설업(건설업법(1949년 법률 제100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을 말함. 이하 동 항에 있어서 같다.)을 경영하는 자가 업으로서 위탁받은 건설 공사(동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시키는 것을 제외함.)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제조위탁 등이라 함은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및 역무제공 위탁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함.
 - ①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 ② 영화, 방송프로 그 밖의 영상 또는 음성 그 밖의 음향에 의해 구성되는 것
 - ③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또는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
 - ④ 전(前) 3호에 나열한 것 이외에 이것들과 비슷한 것으로 정령(시행령)²⁾에서 정하는 것
7. 이 법률에서 원사업자이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http://www.jftc.go.jp/sitauke/co.html>)

- ①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을 넘는 법인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 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49년 법률 제256호) 제14조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함.)이고,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위탁 등(정보성과물작성위탁 및 역무제공 위탁에 있어서는 각각 정령에서 정하는 정보성과물 및 역무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다음 호 및 다음 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는 것
 - ②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000만 엔을 넘어 3억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 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이고,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것
 - ③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을 넘는 법인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 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이고,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 위탁(각각 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정보성과물 또는 역무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 및 다음 항 제3호 및 제4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는 것
 - ④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000만 엔을 넘어 5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 지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이고,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 위탁을 하는 것
8. 이 법률에서 하청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이고,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등을 받는 것
 - ②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이고,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등을 받는 것
 - ③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이고, 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사업자에게서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또는 역무제공 위탁을 받는 것
 - ④ 개인 또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인 사업자이고,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원사업자에게서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또는 역무제공 위탁을 받는 것
9. 자본금의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을 넘는 법인인 사업자로부터 임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존립에 대해 지배를 받고 또 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는 법인인 사업자가 그 제조위탁 등에 관련한 제조, 수리, 작성 또는 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재위탁을 하는 경우(제7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 및 제7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임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존립에 대해 지배를 하고 또 제조위탁 등을 하는 당해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전항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인 때에는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원사업자로, 재위탁을 받는 사업자는 하청사업자로 간주한다.

10. 이 법률에서 하청 대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에 하청 사업자의 급부(역무제공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역무의 제공. 이하 같다.) 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금을 말한다.

(하청 대금의 지불기일)

제 2 조의 2

1. 하청 대금의 지불기일은 원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원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역무제공 위탁의 경우는 하청 사업자가 그 위탁을 받은 역무의 제공을 한 날.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로부터 기산해서 60일의 기간 내에 있어서 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있어서 정해야한다.
2. 하청 대금의 지불 기일을 정하지 않은 때는 원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하청 대금의 지불기일이 정해졌을 때는 원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서 60일을 경과한 날의 전날 하청 대금의 지불기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면의 교부 등)

제 3 조

1. 원사업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규칙³⁾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하청 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하청 대금의 액수, 지불기일 및 지불 방법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청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다. 다만, 이들 사항 중에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

3)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第3条の書面の記載事項等に関する規則(<http://www.jftc.go.jp/sitauke/article3.html>)

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의 내용이 정해진 후 즉시 해당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청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원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에 대신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하청사업자의 승낙을 얻어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의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원사업자는 해당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 4 조

1. 원사업자는 하청사업자에 대하여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역무제공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나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하청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청 사업자의 급부 수령을 막는 것.
 - ② 하청 대금을 그 지불기일의 경과 후에도 여전히 지불하지 않는 것.
 - ③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청 대금의 액수를 감하는 것.
 - ④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 하청 사업자에게 그 급부에 관계되는 물건을 떠맡게 하는 것.
 - ⑤ 하청 사업자의 급부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의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보통 지불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청 대금의 액수를 부당하게 정하는 것.
 - ⑥ 하청 사업자의 급부 내용을 균등하게 하거나 또는 그 개선에도모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물건을 강제로 구입시키거나 또는 역무를 강제로 이용시키는 것.

⑦ 원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나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또는 제3호로부터 전호까지 나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원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청 사업자가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거래의 수량을 감하고,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2. 원사업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 다음 각 호(역무제공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를 제외한다.)에 나열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의해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① 자기에 대한 급부에 필요한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이하 원재료 등이라고 말한다.)를 스스로 구입시켰을 경우에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해당 원재료 등을 사용하는 급부에 대한 하청 대금의 지불기일보다 빠른 시기에 지불해야 할 하청 대금의 액수로부터 해당 원재료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시키는 것.

② 하청 대금의 지불에 대해서 해당 하청 대금의 지불 기일까지 일반의 금융기관(예금 또는 저금 및 자금의 융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에 따르는 할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③ 자기를 위해서 금전, 역무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시키는 것.

④ 하청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청 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에 (역무

첨 부

제공위탁의 경우는 하청 사업자가 그 위탁을 받은 역무의 제공을 한 후에) 급부를 다시 시키는 것.

(지연 이자)

제 4 조의 2

원사업자는 하청 대금의 지불 기일까지 하청 대금을 지불이 없었을 때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역무 제공 위탁의 경우는 하청 사업자가 그 위탁을 받은 역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을 시작해서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지불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그 일수에 따라 해당 미불금액수에 공정거래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연 이자로서 지불해야 한다.

(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제 5 조

원사업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 위탁 등을 했을 경우는 공정 거래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청 사업자의 급부, 급부의 수령(역무제공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하청 사업자가 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의 실시), 하청 대금의 지불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磁氣)적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말을 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장관의 청구)

제 6 조

중소기업청장관은 원사업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나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동 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 나열하는 행위를 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원사업자에 대해서 동 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고)

제 7 조

1. 공정거래 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나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원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하청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하고, 그 하청 대금 또는 그 하청 대금 및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불하거나 또는 그 불이익한 취급을 그만두게 할 것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정거래 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 나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원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감한 액수를 지불하고, 그 하청 사업자의 급부에 관련되는 물건을 다시 인수하여 그 하청 대금의 액수를 인상하거나 또는 그 구입시킨 물건을 인수해야 할 것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해서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원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 8 조

개인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제20조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관련한 배제 조치의 규정은 공정거

래 위원회가 전 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권고]까지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를 때에 한해서 원사업자의 그 권고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고 및 검사)

제 9 조

1. 공정거래 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청 사업자에게 대한 제조 위탁 등에 관한 거래(이하, 단순히 거래라고 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2. 중소기업청 장관은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3.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 대신은 중소기업청장관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력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소관 사업을 경영하는 원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이들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4.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직원이 들어갈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다.
5.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별칙)

제10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원 사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보존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했을 때.

제11조

제9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 조의 형을 부과한다.

부칙 抄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2년 법률 제135호)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 부

부칙(1963년 법률 제157호)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년 법률 제125호)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73년 법률 제115호) 抄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부칙 제5항의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5. 제9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
지법의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년 법률 제146호) 抄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및 제19조
및 부칙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청 대금지불 지연 등 방지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 조치)

제 6 조

1. 제8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하청 대금지불 지연 등 방지법(이하, 이 조에 있어서 구법이라고 함.) 제3조의 제조 위탁 또는 수리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다음 항에 있어서 신법이라고 말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제8조 규정의 시행 전에 구법 제5조의 제조 위탁 또는 수리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제8조 규정의 시행 전에 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련한 중소기업청장관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한 권고 및 공표 및 공정거래 위원회, 중소기업청장관 또는 주무 대신에 의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4조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규정.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5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가 되는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첨 부

부칙(2000년 법률 제126호) 抄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5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후략]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년 법률 제87호)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 2 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이하 신법이라고 말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신법 제2조 제1항의 제조 위탁(금형의 제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동 조 제3항의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및 동 조 제4항의 역무제공 위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제조 위탁 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으로 한 제조 위탁 또는 수리 위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4 조

신법 제4조 제1항 제6호(역무를 강제해서 이용시키는 것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제조 위탁 또는 수리 위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5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 6 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가 되는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 7 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에 있어서 신법의 시행의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신법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첨 부

부칙(2005년 법률 제35호) 抄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2006년 1월4일]로부터 시행한다. [후략]

부칙(2005년 법률 제87호)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2006년 5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후략]

2. 하청 중소기업진흥법(1970년12월26일 법률 제145호)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하청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의 강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하청기업진흥협회에 의한 하청거래의 알선 등을 추진하는 것에 의해 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자주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동시에 그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1. 이 법률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이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다음호에 열거하는 업종 및 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자

②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서비스업(다음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자

③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그 업종마다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그 업종마다

정령에서 정하는 수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이며, 그 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자

④ 기업조합

⑤ 협업(協業)조합

2. 이 법률에 있어서 원사업자이 함은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자기보다 작은 법인인 중소기업자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자기보다 작은 개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열거하는 행위를 위탁하는 것을 업으로서 행하는 것, 개인에 있어서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자기보다 작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열거하는 행위를 위탁하는 것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그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판매 또는 업으로서 위탁받은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물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또는 업으로서 행하는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 또는 그 자가 그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서 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바로 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

② 그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판매 또는 업으로서 위탁받은 제조의 목적물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위한 설비 또는 이것과 비슷한 기구의 제조(전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수리

③ 그 자가 업으로서 위탁받은 물품의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그 자가 그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서 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수리의 행위의 일부(전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④ 그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제공 또는 업으로서 위탁받은 작성의 목적인 정보성과물의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그 자가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정보성과물의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⑤ 그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제공의 목적인 역무의 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

3. 이 법률에 있어서 정보성과물이라 함은 그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①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침이며, 한 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방송프로 그 밖의 영상 또는 음성 그 밖의 음향에 의해 구성되는 것

③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

④ 전 3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4. 이 법률에 있어서 하청 사업자이 함은 중소기업자 중에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자기보다 큰 법인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자기보다 큰 개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 개인에 있어서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자기보다 큰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동 항 각 호의 어느 것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진흥 기준)

제 3 조

1. 경제산업대신은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을 피하기 위해서 하청 사업자 및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이하 진흥 기준이라고 말한다.)을 정해야 한다.

첨 부

2. 진흥 기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하청 사업자의 생산성의 향상 및 제품 또는 정보성과물의 품질 또는 성능 또는 역무의 품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② 원사업자의 발주 분야의 명확화 및 발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하청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의 도입, 기술의 향상 및 사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 ④ 대가의 결정 방법, 납품의 검사 방법 그 밖의 거래 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하청 사업자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의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 때문에 필요한 사항
3. 경제산업대신은 진흥 기준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해야 하다.

(지도 및 조언)

제 4 조

주무 대신은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하청 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진흥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진흥 사업계획)

제 5 조

1. 원사업자 및 특정 하청 조합 등(사업협동조합 그 밖의 단체(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이며,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해당 원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에 열거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원사업자가 해당 특정 하청 조합 등의 구성원일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원사업자의 발주

분야의 명확화, 해당 특정 하청 조합 등의 구성원인 하청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의 도입,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기술의 향상 및 사업의 공동화 그 밖의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고 말한다.)에 대해서 하청 중소기업진흥 사업계획(이하, 진흥 사업계획이라고 말한다.)을 작성하고, 이것을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해당 진흥 사업계획이 적당한 취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진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 ① 진흥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② 진흥 사업의 실시 시기
- ③ 진흥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3. 원사업자는 특정 하청 조합 등이 진흥 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싶은 취지를 신청했을 때는, 해당 특정 하청 조합 등과 협의하고, 진흥 사업계획의 작성에 협력해야 하다.

(승인의 기준)

제 6 조

1. 주무 대신은 전 조 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진흥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동항의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전 조 제2항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진흥 기준에 비추어서 적절한 것이며, 동시에 해당 원사업자 및 특정 하청 조합 등이 그 사항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격성을 소유하는 것.
- ② 전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이 해당 진흥 사업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 ③ 해당 특정 하청 조합 등의 구성원이 해당 진흥 사업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되지 않을 것.

첨 부

- ④ 해당 특정 하청 조합 등의 구성원인 하청 사업자의 대부분이 해당진흥 사업에 참가하는 것.

(진흥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 7 조

1. 제5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원사업자 및 특정 하청 조합 등은 해당 승인에 관련되는 진흥 사업계획을 변경하자로 할 때는 주무 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무 대신은 제5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원사업자 또는 특정 하청 조합 등이 해당 승인에 관계되는 진흥 사업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승인이 있는 때는, 그 변경 후의 것이라고 해서 이하, 승인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흥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전 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준용한다.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제 8 조

1. 중소기업신용보험법(1950 법률 제264호) 제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유동 자산 담보 보험(이하, 유동 자산 담보 보험이라고 말한다.)의 보험관계이며, 하청 진흥 관련 보증(동 항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승인 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을 실시하는 원사업자(특정 하청 조합 등의 구성원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외상판매금채권을 담보로서 제공시키는 것에 한정한다.)이며, 하청 사업자가 해당 승인 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관련하는 것에 관한 동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항 중 보험가액의 합계액수가라고 있는 것은 하청 중소기업진흥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청 진

흥 관련 보증에 관련한 보험관계의 보험가액 합계액수와 그 밖의 보험관계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수가 각각으로 한다.

2. 유동 자산 담보 보험의 보험관계이며, 하청 진흥 관련 보증에 관련되는 것에 관한 보험료의 액수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금액에 연 100분의 2이내에 있어서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얻은 액수로 한다.

(자금의 확보)

제9조

정부는 승인 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그 유통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의 징수)

제10조

주무 대신은 제5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원사업자 또는 특정 하청 조합 등에 대하여 진흥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기업진흥 협회)

제11조

1. 국가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일반 사단 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며,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하 하청 기업진흥 협회라고 말한다.)에 대해 하청 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해서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① 하청 거래의 알선을 행하는 것.

② 하청 거래에 관한 불평 또는 분쟁에 대해서 상담에 응하고, 그 해결에 대해서 알선 또는 조정을 행하는 것.

첨 부

- ③ 하청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을 행하는 것.

제12조

하청 기업진흥 협회는 그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동시에 광역에 걸쳐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주무 대신 등)

제13조

1. 이 법률에 있어서의 주무 대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조언에 대해서는 해당 하청 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으로 한다.
 - ②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진흥 사업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을 실시해야 할 사업자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으로 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진흥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는 하청 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신에게 협의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벌칙)

제14조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동 항의 형을 부과한다.